

제149회 해양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

□ 일시·장소: '26. 6. 17.(수) 13:00 ~ 14:00 / 여수교육원 회의실

□ 참 석 자

- 해양경찰위원회 : 김재봉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7명
- 해양경찰청 : 기획조정관, 담당 과장, 위원회담당관 등 5명

□ 개최 결과: 심의·의결 1건(원안의결 1), 보고 1건

【심의·의결 1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주 요 내 용	심의 결과	부서
1	훈령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소송법」 개정·시행(26.7.1.)으로 전자정보 보전요청 등에 필요한 절차와 별지서식*을 마련 * 제63조의3 ①항~④항,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 등 8개 서식 	원안 의결	수사 기획

【보고 1건】

연번	안 건 명	부서
1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사업 추진 경과 보고	교육훈련

□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안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보존요청 절차 구조를 고려할 때 **오통보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며, 특히 검사의 직권 요청으로 이루어진 사안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호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 실제 오통보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규정은 오통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절차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해당 규정을 마련하였음.
 - 오통보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예외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적·보완적 성격의 규정으로 이해됨.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관계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 간의 오통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내부 처리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필요시 관련 내용 반영 필요성을 검토 하겠음.

□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사업 추진 경과 보고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해양경찰의 업무 특성상 단순 경제성 논리만으로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직자 교육훈련 강화가 국민 안전 확보와 구조역량 향상에 미치는 효과 등을 비용효과분석 측면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어보임. 아울러 예비

타당성 조사 대응을 위한 전문가 자문체계 운영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후보지와 관련해서도 지역의 수요와 유치 의지 등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보임.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반대 의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관리가 필요함. 또한, 인재개발원 설립 취지 중 하나가 교육 접근성 개선만큼 신입·재직자 교육을 구분하여 운영하더라도 지역별 교육여건을 고려한 기능 분담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보임.

- 향후 교육과정 설계 시 지역별 교육 접근성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음.

○ 교육 접근성 논리가 사업 필요성의 핵심 논리로 부각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설득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사업 필요성에 대한 논리체계를 보다 면밀하게 구성해야함. 또한 민간투자방식 등 다양한 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보임.

- 기존 여수교육원과의 중복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재직자교육이 아닌 고도의 전문 실습교육 수요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양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 실습교육은 기존 시설이나 유관기관 협조만으로는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사업 필요성에 대한 논리 체계를 명확히 정립해야함.

- 인재개발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리가 다소 분산되어 있어 사업의 절박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보임. 특히, 교육수요 증가와

관련된 통계자료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므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 필요성도 수요자 관점에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해주길 바람.

- 위원님들의 제언에 공감하며, 사업 필요성과 차별성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자료와 논리를 보완하겠습니다.
- 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사업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보다 설득력있게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